

「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」 상시 모집 공고

충청남도와 (재)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는 한국서부발전(주)과 함께 도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「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」에 참여할 자영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1년 4월 20일
(재)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

I 사업개요

사업목적

- 충남도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안정 기반 확보

사업기간: 2021. 1. ~ 12.

지원대상: 「*자영업자 고용보험」에 가입한 충남도 소재 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(1~7등급)

*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,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(개인사업장은 사업주, 법인은 대표이사) /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경우 가입불가

※ 대표자가 가입한 '자영업자 고용보험'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임

※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에 한해 지원

< 지원 제외 대상 >

- ✓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·투기 조장 업종[별첨 참조]
- ✓ 휴·폐업 중인 사업자

지원규모: 1,000명

지원기간: 신청일로부터 2023년까지

※ 1회 신청으로 별도의 추가신청 없이 계속 지원

□ 지원내용: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% (2021년 예산소진 시까지)

※ 2021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 소급 지원(2020년도 납부보험료는 소급되지 않음)

〈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및 월 지원액 〉

기준등급	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
월 보수액*		1,820,000	2,080,000	2,340,000	2,600,000	2,860,000	3,120,000	3,380,000
월 보험료(A)		40,950	46,800	52,650	58,500	64,350	70,200	76,050
충남도	지원금액(B)	12,280	14,040	15,790	17,550	19,300	21,060	22,810
	지원비율	보험료의 30%						
정 부 (1인 자영업자)	지원금액(C)	20,480	23,400	15,800	17,550	미지원		
	지원비율	보험료의 50%		보험료의 30%				
실본인부담액 (A-B-C)	1인 자영업자	8,190	9,360	21,060	23,400	45,050	49,140	53,240
	10인 미만 고용	28,670	32,760	36,860	40,950	45,050	49,140	53,240

※ 기준보수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133호):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2 제3항 및 법 부칙(법률 제10894호) 제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

※ 기준보수 1~4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정부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복 지원 가능

II 신청 · 접수

□ 신청기간: 상시 모집중

□ 신청방법: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가입 후 지원신청서 제출

※ 이메일 제출 시 제목란에 '자영업자 고용보험료(업체명)' 기재

□ 제출서류: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등 첨부 서류 각 1부

※ 제출서류 중 ④항의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 제출

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〉

제출서류	비고
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	서식 1
②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	서식 2
③ 사업자등록증(또는 최근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)	
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1인 자영업자)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10인 미만 고용)	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s.or.kr)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(www.4insure.or.kr)
⑤ 본인 명의 통장 사본	

□ 제출방법: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

○ (우편) 31450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, 충청남도경제진흥원
기업육성팀(401호)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담당자

○ (이메일) sbizcenter@naver.com

※ 이메일 제출 시 제목란에 '자영업자 고용보험료(업체명)' 기재

□ 추진절차



III 유의사항 및 문의처

□ 지원 절차



□ 유의사항

○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
○ 서류 제출 후 문의처를 통해 접수 여부 확인

※ 제출서류 접수 여부 미확인 및 신청서 기재사항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
귀책 사유에 해당

○ (지원취소)

-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

-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

□ 문의처: 보부상콜센터 ☎ 041-424-4000